

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

2020. 3. 12.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73호
- 나. 제 출 자 : 이경옥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3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3. 2.

## 2. 제안이유

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,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마을미디어 등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(안 제4조)
- 다.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 
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,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안의 구성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마을미디어는 지역단위 공동체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,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‘마을공동체’ 사업의 일환으로, 우리 구는 라디오금천, 담다, 희망라디오, 징검다리 등의 마을미디어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임.

##### 나. 주요 조문별 내용

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	
○ 제1조 : 조례의 목적	○ 제6조 : 위원회 설치 및 기능
○ 제2조 : 조례 용어의 정의	○ 제7조 : 위원회 운영
○ 제3조 : 구청장의 책무	○ 제8조 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○ 제4조 :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	○ 제9조 : 운영세칙
○ 제5조 : 지원	○ 제10조 : 시행규칙

- 안 제1조(목적)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.
- 안 제2조(정의)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, 음성, 방송,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로 정의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제1항에서는 구청장에게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제2항에서는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- 안 제4조(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)는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함.
- 안 제5조(지원) 금천구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는 마을미디어 육성·지원에 관한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또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생산·체험·제작·유통·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, 우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마을미디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서울특별시, 노원구, 성북구, 대전광역시 동구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.

- **조례 제정의 필요성,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**
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5호라,마목에는 지방문화와 예술단체의 육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<sup>1)</sup>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.

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에 따라,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---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###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**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**

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**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**

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**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**
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1. 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76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**제9조(마을공동체 사업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
2. 마을기업 육성
3.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
4.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
5. 마을공동체 복지증진
6.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·기관 지원
7.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
8. 마을학교 운영
9.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·조사
10.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워크숍, 박람회, 국내·외 견학 등
11.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**제14조(설치 및 기능)**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2.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
3.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 위탁(재계약을 포함한다) 및 운영
4.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
5.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